



제43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위 안전 위원회 회부 및 회의 개최 요건 명문화〉

■ 이기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90호)

2026. 7.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기현 · 박해철 · 박지원 · 정춘생 · 최민희 · 장철민
홍기원 · 김교홍 · 문대림 · 한민수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6. 1. 16.

3. 회 부 일 : 2026. 1. 19.

※ 의안번호 : 1609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위원회에서 3명 이상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상정하여 논의하거나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의결해왔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재심의 또는 위원회 회부 절차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소위원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을 기각 처리하는 등 합의 원칙을 의도한 법

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함.

최근 판결(2023구합82360)에서도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인용뿐만 아니라 기각이나 각하 등 모든 의결에 적용되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찬성이 없는 경우 소위원회의 유효한 의결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이에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3회까지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회부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개최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의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① 소위원회에서 안건이 3회까지 의결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한편, ② 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개회 요건을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의2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 ②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소위원회에서 안건이 3회까지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회부한다.</u> 제13조의2(회의의 개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 1. <u>소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u> 2. <u>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u> 3. <u>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u> ② <u>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u> 1. <u>상임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의 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u>

현행	개정안
	2. <u>구성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u>

2. 현행 법령상 위원회 회부 및 개최 요건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¹⁾는 위원회가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와 소위원회(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서는 ① 전원위원회의 구성, 심의·의결사항 및 개최 요건,²⁾ ② 상임위원회의 구성, 심의·의결사항 및 개

-
-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2)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서는 회의체로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로 표현하고 있음. 이하 ‘위원회’ 및 ‘전원위원회’는 ‘전원위원회’로 통일함.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전원위원회 구성) 전원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 11명으로 구성한다.

제16조(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2. 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에 제출을 건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법·시행령 및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상임위원회·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최 요건,³⁾ ③ 소위원회의 종류·관장사항, 구성 및 심의·의결사항⁴⁾

6. 법 제19조제1호에 관한 사항 중 중대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사항
7. 법 제19조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8. 법 제28조에 관한 사항
9. 법·시행령·규칙에서 전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한 사항
10. 상임위원회·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11. 그 밖에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한 사항

제17조(정기회의와 임시회의) ① 전원위원회는 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인권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8조(상임위원회의 구성) 상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9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구금·보호시설과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직권조사 개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소관 부서는 해당 소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 및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긴급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5. 전원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6.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7호 및 제28조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제21조(정기회의와 임시회의) ① 상임위원회는 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상임위원 2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회의의 소집) ① 각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각 소위원회 위원장은 2명 이상의 위원이 긴급성 또는 필요성 등을 이유로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하여야 한다.

제22조(소위원회의 종류와 관장) ①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다음 각 호를 두어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침해구제제1위원회: 조사총괄과 관장 사항
2. 침해구제제2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관장 사항
3. 아동권리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관장 사항
4. 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및 성차별시정팀 관장사항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전원위원회(11명)는 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위원 3명 이상 요청이 있는 경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상임위원회(4명)는 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 상임위원 2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소위원회(각 4명5)의 경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의 처리, 직권

5.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및 장애차별조사2과 관장사항

6. 군인권보호위원회: 군인권보호국 관장 사항

제23조(소위원회의 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을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정하며, 각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결정한다.

제25조(소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제3항의 직권조사의 개시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사건 관련하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이 필요한 사항
4.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사건에 대한 합의권고, 조정위원회 회부, 법률구조의 결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의 구금·보호시설과 법 제50조의4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6. 전원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6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에 관한 사항

③ 소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부서는 전원위원회 회부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 개시·처리 등을 담당하는데, 현재 6개 소위원회(침해구제제1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와 같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2명 이상의 위원이 긴급성 또는 필요성 등을 이유로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소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표-2]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상 위원회 회부 및 개최 요건

구 분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부	-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원위원회에 회부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원위원회에 회부
개최 요건	(정기회의) ○ 월 2회 정기적 개최 (임시회의) ○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회의) ○ 주 1회 정기적 개최 (임시회의) ○ 상임위원 2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위원이 긴급성·필요성 등을 이유로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소위원장은 회의 소집·주재

5) 소위원회 위원 수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서는 위원장이 위원 구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각 소위원회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3. 검토의견

먼저, 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안건이 3회까지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으로써, 소위원회의 의사 형성·결정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로 하여금 책임 있고 신중하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임.

다만, 3회까지 의결되지 아니한 안건을 일률적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면, 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담당 업무를 구분하여 소위원회로 하여금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의 처리 등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못하는 면이 있고, 쟁점이 복잡하거나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위원회 미의결 안건에 대하여 전원위원회에서 위원간 의견을 조율하고 의사를 결정하여야 함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의결안건의 전원위원회 회부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⁶⁾

다음으로, 개정안은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개회 요건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개회 요건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회의 운영

6) 전원위원회 회부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 및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상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개최(개최) 요건을 비교해 보면,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정기회의 유무, 소위원장의 개최 권한 유무를 제외하고 그 밖의 요건에 별다른 차이는 없음.

[표-3] 개정안 및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상 개최(개최) 요건

구 분	개정안	현행 운영규칙
전원위원회	○ 소위원회 요청이 있을 때 ○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기회의) ○ 월 2회 정기적 개최 (임시회의) ○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임위원회	○ 구성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기회의) ○ 주 1회 정기적 개최 (임시회의) ○ 상임위원 2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회	○ 구성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소위원장이 소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명 이상의 위원이 긴급성·필요성 등을 이유로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소위원장은 회의 소집·주재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63	강유정의원	상임위원회·소위원회는 심의·의결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위원 간의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
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3016	윤종오의원	상임위원회·소위원회는 심의·의결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위원 간의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소집·주재권자인 위원장 및 상임위원
장에게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개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정안과 같이 소위원회 소집·주재권자인 소위원장에게 소위
원회 개최 권한을 부여한 것은 타당해 보임.⁷⁾

다만,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개정안과 같이 개최 요건을 법률에
명시한다면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정기회의도 법률에서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017

7)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회의의 소집) ① 각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각 소위원회 위원장은 2명 이상의 위원이 긴급성 또는 필요성 등을 이유로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하여야 한다.